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여 배정하고,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 혁신 업무 추진 인력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두며, 주택·건축 분야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처 법령해석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자치법규 입안지원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 법제처 법제지원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증원하며,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적극행정 추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지원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국에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령의견제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령해석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0. ~ 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운영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제법령해석과”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법령해석과장”을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병무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병무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경제법령해석과장”을 “경제법령해석2과장”으로, “법령에”를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기상청”을 “질병관리청, 기상청”으로 한다.

⑥ 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제교육과장”을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법제교육과장”으로, “알기쉬운법령팀장 및 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을 “알기쉬운법령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8항, 제9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을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토 지원”을 “자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현황 관리”를 “지원·관리”로 한다.

- ① 법제지원국에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법제교육과 및 알기쉬운법령팀을 둔다.

제1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법제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한시조직

제14조(법령의견제시과) ① 법령의견제시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법령의견제시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중 총계 “224”를 “234”로 하고, 일반직 계 “223”을 “233”으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를 “10”으로, 서기관 “26”을 “27”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8”을 “20”으로, 행정사무관 “79”를 “84”로, 행정주사 “17”을 “18”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24”를 “234”로 하고, 일반직 계 “223”을 “233”으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를 “1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9”를 “21”로, 행정사무관 “77”을 “83”으로, 행정주사 “17”을 “18”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총리령 제140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총리령 제159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총리령 제162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3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 나등급 1명)	2021년 12월 30일까지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	5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과	1명 (4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별표 4]

법제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4조제2항 관련)

법령의견제시과(준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1
행정사무관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⑤ (생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⑥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운영</u>
2. ~ 21. (생략)	2. ~ 21.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법령의견제시팀) ①	<u><삭제></u>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장 밑에 법령의견제시팀장 1명을 둔다.</u>	
<u>② 법령의견제시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u>③ 법령의견제시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u>	
<u>1. 정부 내 법령(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u>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지원

2. 규제혁신·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지원

3. 신기술·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지원

4. 법령 의견제시에 따른 개선 입법의 발굴·연구 등 관련 업무

제8조(법령해석국) ①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

② (생략)

③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과장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생략)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

제8조(법령해석국) ① -----

---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장 -----.

④ (현행과 같음)

⑤ -----

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⑥ 경제법령해석과장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병무청-----

---.

⑥ 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경제법령해석2과장-----

--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

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법제지원국) ① 법제지원국에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원과, 법제교육과, 알기쉬운법령팀 및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둔다.

②·③ (생략)

④ 법제지원총괄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법제교육과장 및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알기쉬운법령팀장 및 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⑥ (생략)

-----.

⑧ -----

----- 질병관리청,
기상청 -----

-----.

제9조(법제지원국) ① 법제지원국에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법제교육과 및 알기쉬운법령팀을 둔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자치법규입안지원과
장, 법제교육과장 -----
----- 알기쉬운법령팀장-----

-----.

⑤·⑥ (현행과 같음)

⑦·⑧ (생략)

⑨ 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검토 지원
3. (생략)
4. 위임조례 제때 마련 현황 관리
5. (생략)

⑩ (생략)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③ (생략)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⑦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

1. (현행과 같음)
2. -----
----- 자문
3. (현행과 같음)
4. ----- 지원·관리
5.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
----- 7퍼센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장 한시 정원

제14조(한시 정원) 규제혁신 업무
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
원을 법제처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
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
해야 한다.

총리령 제1404호 법제처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자치법규입안지원
팀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자치법규입안지원팀장이 분장
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

제4장 한시조직

제14조(법령의견제시과) ① 법령
의견제시과장은 서기관으로 보
한다.
② 법령의견제시과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총리령 제1404호 법제처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u>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자치법제지원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u>	
총리령 제162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62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령의견제시팀장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u><삭 제></u>
<u>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서기관 1명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u>	<u><삭 제></u>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24</u>	<u>234</u>	+10
·	·	·	
·	·	·	
일반직 계	<u>223</u>	<u>233</u>	+10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9</u>	<u>10</u>	+1
·	·	·	
서기관	<u>26</u>	<u>27</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18</u>	<u>20</u>	+2
·	·	·	
행정사무관	<u>79</u>	<u>84</u>	+5
·	·	·	
행정주사	<u>17</u>	<u>18</u>	+1
·	·	·	
·	·	·	

[별표 2]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24</u>	<u>234</u>	+10
•	•	•	
•	•	•	
일반직 계	<u>223</u>	<u>233</u>	+10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9</u>	<u>10</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19</u>	<u>21</u>	+2
•	•	•	
행정사무관	<u>77</u>	<u>83</u>	+6
•	•	•	
행정주사	<u>17</u>	<u>18</u>	+1
•	•	•	
•	•	•	